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432호 2019. 4. 22(월)

## 차 례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----- 2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3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----- 8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6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----- 9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85호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15호선) 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·공고 ----- 26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-71호

##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

『주택법』 제15조(사업계획의 승인)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4. 22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사업명 : 오류동 오류지구 45블록 1로트 외 9필지 공동주택(아파트) 신축
2. 사업주체 : (주)우방산업 (대표자 : 강필수)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 - 가.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오류지구 45블록 1로트 외 9필지
  - 나. 대지면적 : 16,307.7m<sup>2</sup>
  - 다. 사업규모 : 연면적 55,436.313m<sup>2</sup> (지하 3층, 지상 18층)
  - 라. 용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6개동 420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
  - 마. 사업비 : 108,843,445천원
4. 사업기간 : 2018. 9. 1. ~ 2021. 6. 1.
5. 변경사항
  - 가. 연면적 변경(지하주차장, 관리사무소, 휘트니스센터, 어린이집 등 변경)
    - 기존 : 연면적 55,403.816m<sup>2</sup>
    - 변경 : 연면적 55,436.313m<sup>2</sup>
6.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  -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-72호

##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

『주택법』 제15조(사업계획의 승인)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4. 22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사 업 명 :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4블록 공동주택(아파트) 신축
2. 사업주체 : (주)바우하우스 (대표자 : 공병도)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 - 가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4블록
  - 나. 대지면적 : 55,086㎡
  - 다. 사업규모 : 연면적 150,146.7953㎡ (지하 2층, 지상 25층)
  - 라.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10개동 887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
  - 마. 사 업 비 : 403,504,264천원
4. 사업기간 : 2019. 5. 1. ~ 2022. 4. 30.
5. 변경사항
  - 가. 사업기간 변경
    - 기존 : 2019. 5. 1. ~ 2022. 4. 30.
    - 변경 : 2019. 5. 1. ~ 2022. 5. 30.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-73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4. 22.  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·변경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가현로 6-36 외 10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람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9.04.2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19-04-22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8-11	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6-36 (마전동)	20081231	옛 지명(자연부락)에서 유래	
2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2-66	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9-1 (석남동)	20090922	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(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)	
3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09-39, 209-41, 209-46, 210-3	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246 (원창동)	20090922	옛날 청라도가 파렴으로 불려, 이 명칭을 따 파랑로로 명명	
4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0, 209-40, 209-44	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242 (원창동)	20090922	옛날 청라도가 파렴으로 불려, 이 명칭을 따 파랑로로 명명	

5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09-44, 209-40, 210	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240 (원창동)	20090922	옛날 청라도가 파렴으로 불러, 이 명칭을 따 파랑로로 명명	
6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09-40, 209-44, 210	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234 (원창동)	20090922	옛날 청라도가 파렴으로 불러, 이 명칭을 따 파랑로로 명명	
7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11-8, 1611-11	인천광역시 서구 마중로 39 (오류동)	20121025	"나가서 맞이한다" 는 순우리말에서 착안	
8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-68	인천광역시 서구 한서로 48 (백석동)	20171025	한들지구의 서쪽에 위치	

9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82-1	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30번길 16 (가좌동)	20090710	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,3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GJ가좌타 워 지식산업 센터
10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89-2	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393번길 19 (원창동)	20090706	중봉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9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1	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8-46, 958-55	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32-13 (당하동)	20081231	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-74호

##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

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1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『주택법』 제 15조(사업계획의 승인)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4. 22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사 업 명 : 인천 당하동 검단신도시 AA1블록 공동주택 신축
2. 사업주체 : 티에스건설(주) (대표 김재용)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 - 가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1블록
  - 나. 대지면적 : 43,894m<sup>2</sup>
  - 다. 사업규모 : 연면적 120,683.9112m<sup>2</sup> (지하2층, 지상25층)
  - 라.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8개동 720세대 및 이에 따르는  
부대·복리시설
  - 마. 사 업 비 : 307,146,869천원
4. 사업기간 : 2019. 11. 01. ~ 2022. 05. 01.
5.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  -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-668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. 4. 22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,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국민권익위원회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검토 결과에 따라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여 우리 구 공무원의 윤리수준 제고 및 청렴분위기 확산을 통하여 부정·부패 없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기회, 회피신청 근거 및 사적이해관계 관리절차 마련에 대한 조항 추가

나. 갑질 관련 행위 기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의3)

- 갑질의 개념, 갑질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금지 규정 신설

다. 감독기관의 부당지원 요구 등의 금지(안 제15조의2)

라.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업무에 신설규정 추가(안 제22조)

마. 공공기관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26조)

### 3. 의견제출

○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감사실장, 전화 032-560-4073, 팩스 032-560-270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○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○ 기타 참고사항

### 4. 참고사항

○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○ 관계법령 발취

-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, 제13조의3, 제14조의2
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0조의2, 제23조, 제24조

##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###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만한다”를 “말한다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규칙은”을 “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5조제7항”을 “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5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2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
2.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

### 3. 직무재배정

#### 4. 전보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청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·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
2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

⑥ 구청장은 제1항에 본문에 따른 신고,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,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·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5조의6제2항”을 “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5조의6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“제5조제3항”을 각각 “제5조제2항”으로, 같은 항 중 “소속 기관의 장이”를 “구청장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소속 기관의 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5항 및 제6항”을 “제4항 및 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3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3(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)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

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1. 인가·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
2.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·요구를 하는 행위
3.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·용역·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
4.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·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
5. 그 밖에 직무관련자, 직무관련공무원,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·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

제15조의2(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) ①감독·감사·조사·평가를 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감독기관”이라 한다)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·행사·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·감사·조사·평가를 받는 기관

(이하 이 조에서 “피감기관”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.

1.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·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
2.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·의전의 요구

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,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(피감기관이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,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제16조제4항 중 “이와”를 “이하”로 한다.

제17조제6항 중 “별지 제9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5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금품 등의 수수” 를 “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, 금품등의 수수,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” 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” 를 “수립하고” 로, “교육을” 을 “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·금품 등을 받는 행위 금지·제한에 관한 사항
2.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·이권개입·알선·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·제한에 관한 사항
3.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
4.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·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별지 제2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[별지 제24호 서식]

##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
신고자	성 명	생년월일
	소 속	직위(직급)
요구자	성명	직위(직급)
	소속	

요구받은 사항

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 고 자

(서명 또는 인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특수관계사업자”란 다음과 같으며, 주식·지분,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의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,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. 이와 같다)이 단독으로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말한다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적용범위) 이 <u>규칙</u>은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(공중보건 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.)에게 적용된다.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-- <u>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) ①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5조제7항에 따라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실을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</p>	<p>제5조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) ①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5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략)

5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1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

2.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

3. 직무재배정

4. 전보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

<신 설>

제5조의6(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)

①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5조의6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(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)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6조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,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) ①

(생략)

②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직자에 대

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청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·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

2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

⑥ 구청장은 제1항에 본문에 따른 신고,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,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·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의6(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)

①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5조의6 제1항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,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) ①

(현행과 같음)

② 제5조제2항-----



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1. 인가·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

2.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·요구를 하는 행위

3.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·용역·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

4.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·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

5. 그 밖에 직무관련자, 직무관련공무원,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

<신 설>

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  
리·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 
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  
하는 행위

제15조의2(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

금지) ①감독·감사·조사·평가를  
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감독기  
관”이라 한다)에 소속된 공무원은  
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·행  
사·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·감  
사·조사·평가를 받는 기관(이하  
이 조에서 “피감기관”이라 한다)에  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
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.

1.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  
적·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 
등의 제공 요구

2.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 
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·  
의전의 요구

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  
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  
행을 거부해야 하며, 거부했음에도  
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  
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  
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  
령책임관(피감기관이 「공직자윤리  
법」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



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⑦·⑧ (생략)

제22조(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) ① 공무원은 알선·청탁, 금품 등의 수수,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,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,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6조(교육)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.

<신설>

----- 별지 제15호서식-----  
-----.

⑦·⑧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) ① -----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, 금품등의 수수,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교육) ① -----  
-----  
----- 수립하고-----  
-----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 -----  
-----.

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·금품 등을 받는 행위 금지·제한에 관한 사항
2.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·이권 개입·알선·청탁행위 및 부당행

<신 설>

② · ③ · ④ (생 략)

위 등의 금지·제한에 관한 사항  
3.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 
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 
할 사항

4.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  
한 신고·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  
호 등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 
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 
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 
교육 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  
다.

④ · ⑤ · ⑥ (현행 제2항, 제3항 및  
 제4항과 같음)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-685호

##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15호선) 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·공고

인천직할시 고시 제1406호(1988.12.2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 
【도로명: 소로1-15호선, 사업명: 석남동 소1-15호선 도로개설공사】 사업을 시  
행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  
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(도시개발과, ☎560-4762)에 갖추어 두고 일반  
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 
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4. 22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위치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-77번지 일원

###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15호선)
- 명칭: 석남동 소1-15호선 도로개설공사

###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- 사업규모: 소로1-15호선 L=168m, B=10m

##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- 주소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, 서구청)

## 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실시계획 인가일 ~ 2020. 7. 31.

##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관리자의 성명·주소

- 따로 붙임

## 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 8. 열람 장소 및 기간

- 장소: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
- 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#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

□ 사업명 : 석남동 소1-15호선 도로개설공사

연번	토지소재지		지목	지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관계인		
	읍면동	지번				성명	주소	성명또는칭명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
	계			1,723.9	1,723.9					
1	석남동	650-77	잡	1,723.9	78.90	황정 *	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* * *			
					239.41	황치 *	인천시 남구 송의동 * * *			
					97.15	강춘 *	인천시 남구 용현동 * * *			
					59.50	대명산업 주식회사	인천시 서구 원창동 * * *			
					31.40	한철 *	부천시 중구 심곡동 * * *			
					31.40	편준 *	부천시 중구 원미동 * * *			
					515.20	한성운수 주식회사	인천시 남구 주안동 * * *	중소기업 은행	서울특별시 석암지점	근저당권
					48.57	강춘*	인천시 남구 간석동 * * *			
					45.99	한성운수 주식회사	인천시 남구 주안동 * * *	중소기업 은행	서울특별시 석암지점	근저당권
					46.00	한성운수 주식회사	인천시 남구 주안동 * * *	중소기업 은행	서울특별시 석암지점	근저당권
					66.22	한성운수 주식회사	인천시 남구 주안동 * * *	중소기업 은행	서울특별시 석암지점	근저당권
					66.22	한성운수 주식회사	인천시 남구 주안동 * * *	중소기업 은행	서울특별시 석암지점	근저당권
					112.20	한성운수 주식회사	인천시 남구 주안동 * * *	중소기업 은행	서울특별시 석암지점	근저당권
					48.58	허순 *	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* * *	중소기업 은행	인천광역시 계양지점	근저당권
					76.70	허순 *	화성시 송산면 문지안길 * * *	중소기업 은행	인천광역시 계양지점	근저당권
					160.46	황지 *	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* * *			

#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

□ 사업명 : 석남동 소1-15호선 도로개설공사

연번	토지소재지		물건의 종류	구조 및 규격	수량	실제 이용 상황	소유자		관계인		비고
	읍면 리동	지번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1	석남동	648	창고	천막+철제 3.5x7.0xH5.0	1동						
2	석남동	650-77	창고	천막+철제 4.8x17.5xH5.0	1동		허순*				
3	석남동	650-77	담장	콘크리트+블록 H1.3xB0.3 (콘크리트기둥1)	15.0m						
4	석남동	650-77	담장	콘크리트+블록 H1.3xB0.3 (콘크리트기둥2)	15.0m		김종*				
5	석남동	650-77	철문	철제 H1.8xL5.5	1						
6	석남동	650-77	웬스	능형망 H1.8m	65.0m		한성운수 주식회사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* * *			
7	석남동	650-77	웬스	PE망 H3.5m	65.0m		한성운수 주식회사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* * *			
8	석남동	650-77	웬스	능형망 H1.8m	92.0m		한성운수 주식회사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* * *			
9	석남동	650-77	철문	철제 H2.1xL6.0	1		한성운수 주식회사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* * *			
10	석남동	650-77	철문	철제 H1.8xL4.0	1		한성운수 주식회사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* * *			
11	석남동	650-77	전신주	8422F 901 용두간 143L17 L1	1		한국전력 공사				
12	석남동	650-77	통신주	석남 16-3	1		한국통신				
13	석남동	650-77	통신주	석남 12-1207	1		한국통신				
14	석남동	650-77	통신주	석남 12-1206	1		한국통신				
15	석남동	648	통신 맨홀		1		한국통신				